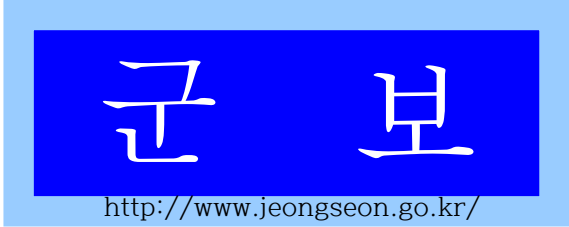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0호 2022. 11. 09.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14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15호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29
- 정선군 조례 제2916호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2
- 정선군 조례 제2917호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36
- 정선군 조례 제291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919호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44
- 정선군 조례 제2920호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47
- 정선군 조례 제2921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9

- 정선군 조례 제2922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53
- 정선군 조례 제2923호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57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7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60
- 정선군의회 규칙 제590호 정선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67
- 정선군의회 규칙 제591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74
- 정선군의회 규칙 제592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77
- 정선군의회 규칙 제593호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7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4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5. 우리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4. 법령에 따라 정선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의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단체 및 기관·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2.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거부
-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4.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 5. 군과의 계약체결
-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 7. 그 밖의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

- 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2. 군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군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맡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액(價額)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였을 때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내용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칙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품등을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

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하 “ 군 공무원 ” 이라 한다)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구성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내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9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검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li style="padding-left: 20px;">-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검직 허위신고 <li style="padding-left: 20px;">- 미신고, 허위신고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제4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li style="padding-left: 20px;">-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li style="padding-left: 20px;">-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회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	--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	--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	--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20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5항, 제26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9호서식] (제22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정선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서식] (제25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정선군의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 (제26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선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 등 규정(안 제4조 ~ 제9조)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라.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규정(안 제13조 ~ 제18조)

마.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방법, 영리 행위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 위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 제24조)

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 규정(안 제25조 ~ 제26조)

사.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7조 ~ 제37조)

아. 행동강령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안 제38조 ~ 제39조)

자. 기존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부칙 안 제2조)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5호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장” 을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3항 중 “업무담당자로” 를 “의정팀장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u>상장</u>으로 한다.</p>	<p>제4조(포상의 종류) ----- ----- <u>상장</u>, <u>모범공무원 포상</u> -----.</p>
<p><u>제9조</u> (생략) <u><신설></u></p>	<p><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p><u>제9조의2</u>(공적심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위원은 의회 공무원 중 사무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u>업무담당자</u>로 한다.</p>	<p><u>제9조</u>(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p>
<p>④ (생략)</p>	<p><u>제10조의2</u>(공적심사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의정팀장</u>으로-----.</p>
<p><u>제10조</u> ~ <u>제12조</u>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11조</u> ~ <u>제13조</u>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p>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의 선발 규정 마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의회의장 포상 종류 추가(안 제4조)

- 표창장, 감사장, 상장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나.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다.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10조의2)

- 업무담당자 → 의정팀장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6호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정선군의회”로, “출석, 답변”을 “출석·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 관·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실, 과장”을 “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군수·부군수
- 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회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범위) ① 정선군의회 --- 출석·답변----- -----.</p>
<p>1. 부군수</p>	<p>1. 군수·부군수</p>
<p>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p>	<p>2. ----- 국장, 관·과장급</p>
<p>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p>	<p>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p>
<p>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p>	<p>4. ----- 관·과장----- -----</p>
<p><신 설></p>	<p>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p>
<p><신 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 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p>

현 행	개 정 안
	<p><u>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u></p> <p>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p> <p>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p>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

□ 주요내용

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추가(안 제2조제1항)

- 군수

-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회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자 추가(안 제2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7호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선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 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3. 다음 해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다.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안 제6조)
- 마. 공모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사.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표창(안 제10조)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0명” 을 “65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0명” 을 “655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5	655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9	629			
4급	4	3	1		
4급·5급					
5급	29	15	4	1	9
6급 이하 계	595	595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50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50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655명</u> ----- --.</p> <p>1. ----- <u>655명</u></p>

□ 제안이유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역균형 뉴딜, 산사태 방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50명 → 655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50명 → 655명 (증 5명)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9호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를 “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기타” 를 “기타 여성권익 및” 으로 한다.

- 1. 여성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취미·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 2.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 3. 여성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 4.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인한 젠더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제4조제2항 중 “복지과장” 을 “여성복지업무 담당 과장”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6.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 제목 “(강사초빙)”을 “(교육강사 등의 위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저명인사 또는 전문 외부 인사를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제할 수 있다.

- 1.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폐지·축소되는 경우
- 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상위 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회관 이용자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를 확대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수정(안 제3조)
- 다. 현 직제에 맞게 수정(안 제4조)
- 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
- 마. 교육강사 위촉해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 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적용 시기(부칙 제2조)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0호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 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
- 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보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 관내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 되면서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다.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라.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마.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조)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1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를 “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 8. 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
-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제7조제1항 중 “둔다”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u>----- ----- ---- <u>규정하는 것</u>-----.</p>
<p>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 ----- ----- ----- <u>따른다.</u></p>
<p>제3조(설립 및 운영) ①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민법」의 <u>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u></p> <p>② (생략)</p>	<p>제3조(설립 및 운영) ①----- ----- ----- <u>에 따른</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재단의 사업)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6. (생 략)</p> <p>제7조(임원) ①재단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p> <p>② ~ ④ (생 략)</p>	<p>터)의 운영 및 관리</p> <p>7. <u>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u></p> <p>8. <u>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u></p> <p>9. <u>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u></p> <p>10. <u>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u></p> <p>11.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7조(임원) ①----- ----- 두 <u>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문화관광예술진흥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 확대(안 제1조)

- ‘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 내용 추가

나.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4조)

- 제6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신설)
- 제7호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신설)
- 제8호 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신설)
- 제9호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신설)
- 제10호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신설)
- 제11호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 내용 추가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2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아리샘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신동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북평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북평면 북평3길 73	
임계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고한 복합문화센터	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81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사용시설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부대시설		
아리샘터	전시실		20,000	사용기준(1일) : 오전 10:00 ~ 18:00
	다목적실		10,000	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연습실1		10,000	
	연습실2		5,000	
		녹음실	10,000	
신동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회의실			
북평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임계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	연습실		무료	개인·댄스·밴드·두드림연습실
	컴퓨터실			IT교육실, 미디어실
	마주침공간			
	독서실			
	동아리방			
	공작실			
		VR체험방		
		노래방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 제안이유

생활문화센터(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1(명칭과 위치) 일부개정 - 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나. 별표 2(사용료 등) 일부개정 - 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제284회 정선군의회(2022. 10. 20.)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3호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제안이유

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의 지도·감독과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규 칙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7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55	308	131	18	95	103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29	304	109	18	95	103	
지 도 직			20	0	20	0	0	0	
연 구 직			5	3	2	0	0	0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5급	소 계	29	15	4	1	4	5	
		행 정	8	8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3	3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2			2			
	6급	소 계	154	77	26	5	21	25	
		행 정	47	31		1	6	9	
		세 무	4	4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1	11					
		환 경	2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6	4				2			

일 반 직	6급	행정·사회복지	15	5			4	6
		행정·농업	4		1			3
	행정·녹지	2	2					
	행정·전산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간호· 의료기술	1		1				
	행정·환경	4	2			1		1
	행정·시설	6	5			1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1		1				
	농업·시설·녹지	3				3		
	시설·공업	2			2			
	공업·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녹지	5						5
	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8		8				
	보건진료	7		7				
	운전·기계운영	3	3					
	사무운영·시설관리	2	1		1			
	7급	소 계	183	96	31	5	23	28
		행 정	55	34			8	13
		세 무	8	7				1
사회복지		12	5			3	4	
전 산		2	2					
공 업		1	1					
농 업		3		3				
수 의		1		1				
녹 지		2	2					

일 반 직	7급	보 건	7		7			
		의료기술	3		3			
		간 호	5		5			
		환 경	4	2		2		
		시 설	21	13	1	1	2	4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3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재	1	1				
		전산·방송통신	2	2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2		2			
		보건진료	3		3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0					
		기계운영	3	1			1	1
운 전	5	3	1		1			
사무운영	2	1			1			
운전·기계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45	67	28	6	23	21	
	행 정	32	20		1	6	5	
	세 무	3	3					
	사회복지	11	3	1		1	6	
	전 산	0	0					
	공 업	4	2		2			
	농 업	4		1		2	1	

일 반 직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 호	7		5		2	
	환 경	3	2		1		
	시 설	18	11		1	4	2
	전산·방송통신	1	1				
	방재안전·환경	2	2				
	행정·세무	5				4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8	4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9		9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0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5				4	1	
숙 기	0						
9급	소 계	113	46	18	1	24	24
	행 정	26	13	1		7	5
	세 무	3					3
	사회복지	20	6	1		6	7
	공 업	4	3		1		
	농 업	6		3		2	1
	녹 지	3	3				
	환 경	2	2				

일 반 직	보 건		6		6			
	의료기술		1		1			
	시 설		10	7			2	1
	행정·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도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0	0				
	기계운영		1		1			
	열관리 운영		0					
	운 전		14	3	4		3	4
	사무운영		5	1	1		2	1
	시설관리		3				1	2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도직	지도직 소계		20	0	20	0	0	0
	4·5급 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5급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0					
	5급상당	농촌지도관	1		1			
	6급상당	농촌지도사	18		18	0	0	0
연구직	연구직 소계		5	3	2	0	0	0
	6급상당	학예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 제안이유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역균형 뉴딜, 산사태 방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50명 ⇒ 총 655명 (증 5명)

나. 조정내역

○ 분야별 정원 : 5명 (지역현안 1, 국가정책 4)

지역균형 뉴딜 (국가정책)	산사태 방지 (국가정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국가정책)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지역현안)
1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 (지방녹지서기보)	2명 (지방간호서기)	1명 (지방학예연구사)

※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1명)의 경우 의회 정원에 반영(2022.1.13.)

○ 부서별 정원 : 5명

행정국 전략산업과 (국가정책)	시설국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시설국 산림과 (산사태 방지)	정선읍 (주공사업)	신동읍 (주공사업)
1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 (지방학예연구사)	1명 (지방녹지서기보)	1명 (지방간호서기)	1명 (지방간호서기)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2022. 10. 20.)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 규칙 제590호

정선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의회의원”을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신분증”으로, “발급등”을 “발급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의회의원”을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신분증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분증”을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으로, “첨부하되”를 “수록하되”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중 “당해 지방의회 의장”을 “정선군의회의회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를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를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으로,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신분증의 반납등)”을“(신분증의 반납 등)”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및 서식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의회</u> <u>의원의 신분</u>을 표시하는 <u>신분증</u>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u>규격, 제식 및 발급</u>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지방</u> <u>의회의원</u>에게 적용한다.</p> <p>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 상) ① <u>신분증</u>에는 <u>의원증</u> 번호, <u>인적사항</u>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u>첨부</u>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u>별표</u>와 같다.</p> <p><u><신 설></u></p> <p>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u>당해 지방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p> <p>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생 략)</p> <p>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u>발급일 전 6월</u>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p> <p>③ 신분증을 <u>분실</u> 또는 <u>파손</u>되거나 <u>기재사항의 변동</u>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2호 서식</u>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u>의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② (생 략)</p>	<p><u>정선군의회의원신분증 규칙</u></p> <p>제1조(목적) ----- <u>정선군의회의원</u>----- <u>신분증</u>----- ----- <u>발급</u> 등----- -----.</p> <p>제2조(적용범위) ----- <u>정선군</u> <u>의회 의원</u>-----.</p> <p>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u>정선군</u> <u>의회 의원</u>의 <u>신분</u>을 표시하는 <u>신분증</u>(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u>수록</u>하 되-----.</p> <p>② <u>신분증</u> 발급에 있어서의 <u>직</u> <u>인의 날인</u>은 그 <u>직인</u>의 <u>인영</u>의 <u>인쇄</u>로써 이에 <u>같음</u>할 수 있다.</p> <p>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 <u>정선군의회의장</u>----- -----.</p> <p>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발급일 전 6개월</u> <u>이내</u>에 <u>촬영</u>한 것이어야 ---.</p> <p>③ ----- <u>분실</u>하거나 <u>파손</u> 또는 ----- ----- <u>때</u>에는 <u>별지 제2호서식</u>----- -----.</p> <p>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별표]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C : 100 M : 10 Y : K : C : 5 M : Y : K : 3 C : 40 M : Y : K :

단위 : mm(허용오차±1)

1. 위의 ① ~ ⑰까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앞 면〉	
①	정선군의회 마크
②	사 진(30mm × 40mm)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⑤	의 회 명(정선군의회)

〈뒷 면〉	
⑥	발급번호
⑦	제목표기(의원증)
⑧	소 속(정선군의회)
⑨	성 명
⑩	생년월일
⑪	임 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연월일
⑭	발급기관장 명의(정선군의회회장)
⑮	발급기관장 직인
⑯	소재지 안내
⑰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글자 속성

구 분	글자크기	색 상	서체종류	
앞면	이름(한글, 영문)	13Point, 9Point	C: M: Y: K: 100 (검정)	고딕
	정선군의회	13Point	C: M: Y: K: 100 (검정)	명조
뒷면	제 호	8Point	C: M: Y: K: (백색)	고딕
	의원증	16Point	C: M: Y: K: 100 (검정)	고딕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	10Point	C: M: Y: K: 100 (검정)	고딕
	년 월 일	8Point	C: M: Y: K: 100 (검정)	명조
	정선군의회회장	15Point	C: M: Y: K: 100 (검정)	명조

3. 의원신분증 도안등의 색상

- 가. 색상 : 흰색바탕에 청색
나. 글씨 : 흰색, 남색, 검정

4. 신분증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한다.

5. 의회마크 규격

- 가. 전면 : 11mmX11mm
나. 후면 : 28mmX28mm

6.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

7.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의장									사유	회수 일시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성명(한글)
	생년월일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 기타 ()
분실사유	* 분실 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항	*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개 정 이 유

- 정선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및 별지 서식 변경과 조례정비 기준에 의거 어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규칙의 제명 변경
 -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의원 신분증 직인 날인 규정 신설 (안 제3조)
- 그 외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정비(안 제1조 ~ 제6조)
- 의원 신분증 기재사항 변경 (별표서식)
- 신분증 발급대장 및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2022. 10. 20.)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 규칙 제591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정선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④ 모범공무원은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진출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안 제1조)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안 제2조)
- 모범공무원 포상방법 (안 제3조)
- 모범공무원 포상절차 및 시기, 인원 (안 제4조 ~ 안 제5조)
-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및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2022. 10. 20.)에서 의결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 규칙 제592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2019.12.27.시행)를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폐지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2022. 10. 20.)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9일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 규칙 제593호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을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장”을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의”를 “5일 이내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의장”을 “정선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때”를 “때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2조 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를 “휴회 중이라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요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7일전”으로 한다.

제19조의1을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신·구조문대비표”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번안동의”를 “번안 동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질의 토론” 을 각각 “질의·토론”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하며” 를 “하며,” 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한다)를” 을 “한다)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를 “한다” 로 한다.

제36조 중 “소수의견자” 를 “소수 의견자” 로, “때는” 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41조 후단 중 “때 까지” 를 “때까지” 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거절하여서” 를 “거절해서” 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회수” 를 “횃수” 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들을수” 를 “들을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는” 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회의중지” 를 “회의 중지”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위원회” 를 “기타 위원회” 로 한다.

제63조 본문 중 “제출되는” 을 “제출된” 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분별” 을 “부문별” 로 한다.

제5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 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 으로 “결산” 은 “기금의 결산” 으로 본다.

제69조제1항 중 “회의중” 을 “회기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일전” 을 “5일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답변전까지 의장과 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질문 2일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서면으로 배부되도록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의원과의” 를 “의원과” 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 를 “10일 이내” 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군수등의 발언)” 을 “(군수 등의 발언)” 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의원” 을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 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91조에 따라” 로 한다.

제78조제5호 중 “행사등” 을 “행사 등” 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결)” 을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를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 를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청인수” 를 “방청인수” 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법 제97조에 따라 다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8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6조” 를 “법 제9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3일이내” 를 “3일 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u>의회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u>임기초에 당선</u> <u>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시</u>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정선군의회 의원</u>----- ----- <u>임기 개시 전에 당</u> <u>선증서를 정선군의회 사무과장</u> <u>(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u>- -----.</p>
<p>제3조(의석배정) <u>의원의 의석은</u> <u>의장이</u>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u>총선거후</u>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3조(의석배정) ----- <u>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u> <u>이라 한다)</u>----- ----- . --- <u>총선거 후</u> ----- -----.</p>
<p>제4조(개회식) <u>의회는</u>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p>	<p>제4조(개회식) <u>정선군의회(이하</u> <u>“의회” 라 한다)</u>----- ----- . ----- ----- -----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략) ② <u>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u>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u>5일 이내인</u> ----- -----</p>

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 정선군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의) ----- 때도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

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략)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1(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 제 72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이라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요구-----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7일전-----
-----.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
-----신·구
조문 대비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번안) 번안 동의-----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안전심의) ① 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8조(발언의 허가) ①·② (생략)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

제25조(안전심의) ① -----

 ----- 질의·토론 -----.

질의·토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발언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
며, -----

 -----.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 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때에는 -----
-----.

제41조(표결의 참가) -----

-----.

--- 때까지 -----
-.

제41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거절해서-----.

③ ~ ⑤ (생략)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5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 10.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
----- 회수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공청회) ① -----

----- 들을 수 -----

② ----- 때에는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회의 중지-----

2. ~ 10. (현행과 같음)

제69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 회의는 회의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일전까지 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전까지 의장과 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 기타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0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략)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

다.

제69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
---- 회기 중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5일전 -----
-----.

④ -----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질문 2일 전
까지 모든 의원에게 서면으로
배부되도록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
----- 의원과의 -----
-----.

제70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
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1조(군수등의 발언) (생략)

제73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
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
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③ (생략)

제74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
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
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12.22.>

② (생략)

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0일 이내-----

---.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군수 등의 발언) (현행과
같음)

제73조(사직) ① 법 제89조에 따
라 의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

-----.

1. ~ 4. (생 략)
 5.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
 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1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의 종결) ①·② (생 략)

제83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

- 1. (생 략)
- 2. 주기가 있는 사람

3. 삭 제

4. (생 략)

② (생 략)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
 다.

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
 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생 략)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 9.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행사 등 -----

제81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의 종별) ①·② (현행과 같음)

제83조(방청의 제한) ① -----
 -- 하나에 -----
 -----.

1. (현행과 같음)

2.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방청인 수-----

 -----.

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법 제97조에 따라 다음----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9. (현행과 같음)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
 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
 6.12.22.>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
 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
 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
 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
 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생략)

②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
 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
 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계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
 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3일 이내-----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 천재지변 발생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의원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 회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의원 회의 원격 출석 및 표결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41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표결 및 발언 가능
- 의안의 제출기한 변경 (안 제19조제2항)
 - 집회일 5일전 → 7일전
- 의원 5분 자유발언 횟수 제한 규정 삭제 (안 제34조)
 - 발언 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 초과 할 수 없다 → 무제한
- 군정에 대한 질문 규정안 개정(안 제69조)
 - 군정질문서 송달 기간 변경(의장→군수) : 질문 2일전 → 5일전
 - 군정질문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군수→의원) : 답변전 → 질문 2일전
- 상위 법령(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 정비